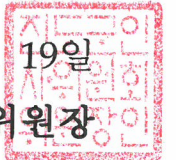


## 2021년도 제3회 진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

2021년도 제3회 진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1월 19일

진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임용기간	담당직무	근무 예정 부 서
노무사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1	2년	-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관련 업무 (단체교섭, 법령해석, 지문, 갈등 관리 등) - 노무관리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 등	행 정 과
통계관리 (지방행정9급 일반임기제)	1	2년	- 지역 내 총생산 추계, 인구주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 통계연보 발간 등	기획예산과
장학회 (지방행정9급 일반임기제)	1	2년	-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 - 기타 장학회 운영 등	행 정 과
평생교육사 (지방행정9급 일반임기제)	1	2년	-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및 강사관리 등	행 정 과
선박항해 (지방해양수산9급 일반임기제)	1	2년	- 관공선 항해운영 및 관리 - 관공선 보안 및 검사관련 사항 등	조 도 면
선박기관 (지방해양수산9급 일반임기제)	1	2년	- 관공선 기관장비 관리·정비 및 유지보수 - 관공선 유류 및 청수, 안전 관리 등	조 도 면
농산물안전분석 (지방농업연구사 일반임기제)	1	2년	-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운영) - 농산물의 잔류농약 507가지 분석 업무 - 농산물별 농약잔류허용 기준 안내 - 농약, 시약, 시험기구 등의 관리 - 농산물 안전분석 확인서 발급 등	농업기술센터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임용기간	담당직무	근무 예정 부 서
흑미순도관리 (지방농업연구사 일반임기제)	1	2년	- 진도흑미 자체 개발품종 실증 연구 - 진도흑미 기본식물 관리 및 종자 순도 유지 - 흑미 우량종자 채종포 조성 및 농가관리 - 진도흑미 기능성 품종 연구와 지적 재산권 확보 - 국립식량과학원과의 공동 연구사업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연구 (지방농업연구사 일반임기제)	1	2년	- 기후변화 대응 미래농업 ICT 기술 연구 -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 빅데이터 구축 - 빅데이터 분석 및 농가 컨설팅 - 식물공장 및 양약 재배 기술 연구 - 진도 지초 안정화 재배 기술 정립	농업기술센터

## 2. 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3. 응시자격

### 가.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 9급 : 만 18세 이상
- 7급·연구사 : 만 20세 이상

○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기 타 : 성별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분야 (임용직급)	채용 자격 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노무사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p>「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b>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b>한 사람으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li> <li>· 3년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li> <li>·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li> </ul> <p><b>【관련분야 실무경력】</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의 노무관련분야 실무경력</p>
통계 (지방행정9급 일반임기제)	<p>1년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p> <p><b>【관련분야 실무경력】</b>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에서 통계조사 기획·분석 분야 근무 경력</p>
장학회 (지방행정9급 일반임기제)	<p>1년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p> <p><b>【관련분야 실무경력】</b>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장학회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p>
평생교육사 (지방행정9급 일반임기제)	<p>「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b>평생교육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b>로서, 1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p> <p><b>【관련분야 실무경력】</b>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평생교육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p>
선박항해 (지방해양수산9급 일반임기제)	<p><b>항해사 6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b>로서, <b>자격 취득 후 1년 이상</b> <u>관련분야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p> <p><b>【관련분야 실무경력】</b>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선박항해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p>

임용분야 (임용직급)	채용 자격 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선박기관 (지방해양수산9급 일반임기제)	기관사 6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b>【관련분야 실무경력】</b>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선박기관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
농산물안전분석 혹미순도관리 특화작목연구 (지방농업연구사 일반임기제)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 농산물안전분석(농화학, 화학), 혹미순도관리(농학, 원예학, 식량작물학, 식물보호), 특화작목연구(농학, 원예학, 시설원예학) <b>【관련분야 실무경력】</b>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자격요건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다만,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 작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등에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와 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 인정 가능(해당 기간 급여액 등 증빙 제출 필수)
-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전임근무의 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응시경력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4. 시험 시행 일정

가. 시험 명 : 제3회 진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나.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1.11.19.(금) ~11.29.(월)	'21.11.30.(화) ~12.02.(목)	'21.12.03.(금)	'21.12.08.(수)	'21.12.10.(금)

※ 시험장소, 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군 홈페이지([www.jindo.go.kr](http://www.jindo.go.kr))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 다.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자격증 등 서류심사로 적격, 부적격 결정)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전문지식과 응용능력 검정)

## 5. 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서류 등

### 가.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21. 11. 30. ~ 12. 02.(3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만 가능)
- 장 소 : 진도군 행정과(3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우)58915,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진도군청 행정과 행정팀)

※ 우편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응시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우편송부(회송용 봉투에는 등기우표 부착, 수신인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나.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1부 <붙임 1 서식>
  - 응시 수수료 : 7급·연구사 7,000원 / 9급 5,000원
    - 방문접수 : 접수 시 별도 안내
    - 우편접수 : 우체국 통상환증서
- ② 이력서 1부 <붙임 2 서식>
- ③ 자기소개서 1부 <붙임 3 서식>
- ④ 직무수행 계획서(A4 용지 5매 이내) 1부 <붙임 4 서식>
- ⑤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⑥ 응시분야 자격증(자격요건 증명서) 사본 1부(해당 시)

⑦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임용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 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류(관련분야 포트폴리오, 계약서, 보수내역 등) 제출 시 심사를 통해 경력인정여부를 결정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 학력, 경력 및 자격증은 제출된 증빙자료만 인정함.

⑧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분야 학위 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함께 제출
- 공고문에 기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 <붙임 5 서식>

⑨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원본) 1부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출 불필요
- 제출한 경력에 대해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경력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6 서식>

## 6. 임용신분 및 보수

- 임용기간 : 2년(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해지·연장 시 반영
- 계약체결
  - 최초 임용 : 합격자 신원조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용약정
  - 재약정임용 :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 임용신분 : 일반임기제공무원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결정함

임용직급	하한액	상한액	근무시간	비고
7급	44,514천원	62,675천원	주당 40시간	
9급·연구사	-	48,415천원	주당 40시간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7. 합격자 결정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를 교부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종료 후(최종 면접시험)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 분 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행정과 행정팀(540-32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진도군 홈페이지  
<http://www.jindo.go.kr> 고시·공고 란에 공고